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5.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가에 규정된 정의가 적용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세계동물보건기구 및 「국제식물보호협약」에 의하여 개발된 관련 정의가 고려된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각 당사국의 중앙정부에 의하여 그 당사국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그 당사국의 그러한 당국을 말한다. 그리고

긴급조치란 그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상 시급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수입 당사국에 의하여 수출 당사국에 적용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말한다.

제5.2조 목적

이 장의 목적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무역을 원활히 하면서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고, 양 당사국 간의 협력, 의사소통 및 투명성을 증진하며, 양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과학적 원칙에 근거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제5.3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식품 및 식품생산품에 할랄 요건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5.4조

일반규정

1.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5.5조

긴급조치

1. 당사국이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부속서 5-가에 따라 지정된 연락처 또는 양 당사국의 이미 설치된 연락채널을 통하여 수출 당사국에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2. 수출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긴급조치를 채택하는 당사국에 논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논의는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개최된다. 그 논의에 참여하는 각 당사국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논의를 통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를 적절히 고려한다.
3. 당사국이 긴급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조치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또는 수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검토한다. 수입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수출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의 채택된 긴급조치에 대한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수입 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검토 결과를 수출 당사국에 제공한다. 긴급조치가 검토 후에 유지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가장 최근의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그 조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요청에 따라, 긴급조치의 지속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제5.6조

투명성

1.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나에 규정된 투명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조를 이행할 때,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그 적용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을 추구하기 위하여 투명성에 관한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의 관련 지침과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한다.
3. 양 당사국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및 적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4. 수출 당사국은 그 수출 당사국에서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물 또는 식물 건강 상태의 중대한 변화 또는 식품 안전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에 시의적절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5.7조

협력 및 역량 강화

1. 양 당사국은 적절한 자원의 이용가능성을 조건으로, 이 장에 합치되게 상호 관심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역량 강화, 기술 지원, 기술 협의, 협업 및 정보 교환을 포함하여, 추가 협력을 위한 기회를 모색한다.

2. 협력 활동을 수행할 때, 양 당사국은 자원의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작업 프로그램을 양자적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자국의 협력 활동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도록 권장된다.

제5.8조

권한 있는 당국 및 연락처

1. 이 협정의 발효 시에,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연락처를 지정하고, 이 협정의 발효 후 30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2. 이 장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상,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연락처는 부속서 5-가에 기재된 기관이다.
3. 각 당사국은 연락처의 모든 변경과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연락처에서의 구조, 조직 및 책임 분장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제5.9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제17장(분쟁해결)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않는다.

부속서 5-가
권한 있는 당국 및 연락처

이 장의 목적상,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경우,

가. 권한 있는 당국

- 1)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그 승계기관
- 2)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3)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그 승계기관

나.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관

2. 말레이시아의 경우,

가. 권한 있는 당국

- 1) 농업식량안보부 산하 농무국(DOA) 또는 그 승계기관
- 2) 농업식량안보부 산하 수산국(DOF) 또는 그 승계기관
- 3) 농업식량안보부 산하 수의국(DVS) 또는 그 승계기관
- 4) 보건부 산하 식품안전품질프로그램(FSQP) 또는 그 승계기관

나. 연락처

농업식량안보부(MAFS) 또는 그 승계기관